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 <신설>	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	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 ③ 위원회의 회의는 <u>10인이내의</u>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